

양자제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 가족구조와 가계계승 의성김씨 호구단자 분석을 중심으로

박수미*

이 글은 조선후기 호적자료의 양자계승기록을 단서로 조선후기 양반가족의 가계계승 원리와 가족유형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분석자료는 1669년에서 1913년까지 의성김씨 호구단자이다. 분석 결과 조선후기의 가족형태와 조선전기나 조선중기의 가족형태 사이에 많은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부계계승원리의 강화이며 그 한 가운데 양자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분석자료의 전체 호구 평균가구원수는 5.66명으로 17세기 초에 비해 가족규모가 매우 커졌으며 가족구성원의 친족 범위도 매우 넓어져, 17세기 초 양반가의 가족원이 되는 근친자 종류가 6종의 자였던 데 비해 의성김씨 호구단자에 나타난 그것은 무려 70종이었다. 조선전기 양반가 분석결과와 달리 의성김씨 집안의 가족형태는 직계가족, 방계가족의 비율이 45%를 넘을 뿐 아니라 18세기, 19세기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이고 부부가족의 비중은 1/3 수준으로 약화되는 등, 가구구성의 친족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의성김씨 호구단자에서 입양을 통해 가계를 계승한 사례는 전체 호구 가운데 무려 33.8%에 이른다. 적장자가 호주 자리를 승계할 때까지 살아 있을 확률이 낮았던 당시의 인구학적 환경 속에서 적장자가계계승 원리를 확고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활용된 것이 양자제도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종족집단은 자신의 직계혈통에게 가계를 계승하는 것보다도 입양을 통해서라도 '적장자 자리'라는 명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사회이고, 이런 양반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을 때까지 호주대리인을 내세우는 등 양자제도를 보편화시켰던 것이다.

핵심단어: 호구단자, 양자제도, 조선후기 가족유형, 적장자가계계승

I. 머리말

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사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 영역과 정책 영역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연구주제이다. 특히 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업화 단계에서 주류를 이루던 발전지향적 사관과 거대담론이 휩쓸던 시기를 지나면서 일상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는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인 가족(사)연구의 부활을 불러일으켰다(정진성, 1990). 학문 대상으로서의 가족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대상이어서 오히려 개념 규정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니는 측면도 있다. 버제스와 로크(Burgess and Locke, 1953)는 가족을 “결혼이나 혈연 또는 입양의 유대로 맺어지며 단일가구를 형성하는 집단”으로 지칭하고, 최재석은 “가계(家系)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집단”으로 정의한다(최재석, 1987: 28-29).

이처럼 가족에 대한 정형적인 정의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이미숙, 2007). 그리고 그러한 과업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변화해 왔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 화두와 연결된다. 저출산·고령사회 위기감 속에서 가족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가족의 출현, 노인 1인가구를 비롯한 독신가구의 증가,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으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가족은 그야말로 변동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가족의 모습은 과거 우리 조상들의 가족과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공통점이 있을 것이며 바로 그런 점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가족의 변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오랜 동안 가족주의가 매우 강한 사회로 알려져 왔다. 특히 근대 이전의 사회상에 대해서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근간을 이루는 매우 전형적인 전통사회라는 관념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최근 조선시대에 대한 우리의 통념이 어찌면 훗날 ‘근대’의 시선에 의해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손병규, 2007). 특히 조선시대 가족의 구조와 일상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선 여전히 제한적인 합의만 이뤄진 상태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문제를 확대가족의 전통이 사라진 데에서 찾는 논의가 그 한 예이다. 그동안 한국가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족사를 경험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은 더욱 심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가족사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호적자료를 중심으로 전통가족의 한 부분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현대 가족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친 조선후기 가족생활 가운데 우선 양반가의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당시의 가족구조와 가족구성원이 담당했던 최대 과업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는 부계 순혈주의를 지

향하는 엄격한 유교적 가부장제로 규율되는 사회이다. 그런 성격의 사회에서 호적과 같은 가족생활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양자계승 사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 양반가족의 가계계승 원리와 가족유형을 규명해 보는 것이 이 글의 연구목적이다.

II. 자 료

일반적으로 가족 및 친족의 구조와 조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는 고문서 분류기준에 따른다면 (1) 호적자료 (2) 분재기 자료 (3) 家訓류 (4) 族契 또는 門中契 관련자료 등이다(김현영, 2003). 그 중에서도 특히 호적제도는 당 시기의 가족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양반가의 가족구성형태와 양자제도를 통한 가계계승원리의 파악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조선시대의 호적제도는 호구파악을 통한 구역, 요역의 부과와 신분, 노비소유권의 확인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다. 호적대장은 3년마다 개수(改修)하여 호조(戶曹) 및 한성부와 해당 도, 군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적에는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준호구(準戶口)가 있다. 호구단자는 장적(帳籍)을 개수하기 위하여 올리는 신고용의 문서이며 이 단자가 관에 의해 구장적과 대조·확인되어 다시 제출자에게 환부되면 준호구의 효력을 갖게 된다(한국학중앙연구원, 1989). 전통시대의 가족 및 친족조직을 복원하는 데 호적 못지않게 중요한 자료가 족보이다. 호적과 족보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호적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역을 징발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입장에서 고의적인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호적의 기록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권태환·신용하, 1977; 박희진·차명수, 2003). 김현영(2003)은 “조선후기의 호구파악 수준은 실제 인구의 40% 정도로 매우 불완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족보는 연속적인 자료 형태로 풍부히 존재하고 있지만 여자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어버린 사람을 애초부터 제외한 기록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특정계층에 치우친 자료라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조선후기 양반층의 당시 가족구성 형태와 입양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료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 자료인 호구단자를 분석자료로 채택하였다. 특히 이 연구의 분석자료인 의성김씨 호구단자는 연속적인 자료를 풍부히 포함하고 있어서 시계열적 분석에도 손색이

없다. 다만 호적자료의 근본적인 한계인 고의 누락 등에 따른 과소기록은 차후 족보와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질 부분으로 남겨 두는 바이다.

이 연구의 분석자료인 의성김씨 호구단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성김씨 호구단자는 고려 공양왕 2년인 1390년부터 20세기초반인 1913년까지 무려 500여년에 걸친 방대한 시계열 자료로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문서집성》에 수록된 호구단자는 모두 288건이다. 이 가운데 이 연구는 17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호구단자를 분석대상으로 하는데 이 자료는 《고문서집성 5, 6, 7》의 세 책(1989)에 수록된 고문서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선인들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생활, 친족생활, 종족생활, 향촌 내의 교유생활, 관직생활 등 모든 생활에 걸쳐서 문서를 작성했다(박병호, 2004). 조선후기의 구체적인 가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기 힘든 상황에서 종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호구단자의 존재는 조선시대의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를 겪었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은기수, 2004a).

Ⅲ. 선행연구검토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는 동질적인 사회가 아니라 17세기 이전의 사회와 이후의 사회가 매우 이질적인 사회로 구분된다고 알려져 있다(최재석, 1983).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사회 성격의 차이는 가족구조의 특성과 상속제, 봉제사참여자격 등 친족원리의 차이로 표현된다. 먼저 가족구조의 특성이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에 어떻게 다른지를 1630년 산음호적(山陰戶籍)과 1807년 양좌동(良佐洞) 호적초안(戶籍草案)에 대한 최재석의 연구(1983)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조선전기(17세기 초)의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부부가족이 전체의 65%인 과반수를 차지하고 직계가족, 방계가족은 다 합쳐도 10%에도 미달한다. 반상(班常)의 신분간에 직계가족과 방계가족의 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다. 배우자 있는 가구주는 신분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고 배우자 없는 가구주는 신분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노비없이 가족원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은 약 72%이며 양반 가운데에 노비를 소유한 가족은 64%정도이다.

이에 비해 1807년 양좌동(良佐洞) 호적초안(戶籍草案)에 입각하여 18세기 말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양반에는 노비가 없는 집이 한 집도 없다. 조선전기에는 상민이나 사노(私奴)도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던 데 비해 18세기 말에는

상민 가구 62가구 중 1가구만이 1인의 비(婢)를 소유하고 사노 가운데엔 노비를 소유한 집이 한 집도 없다. 이처럼 반상 간의 노비소유 등 가구구성원의 차이가 현격해졌다. 물론 19세기로 가면 호적의 양반 호구에도 노비의 기록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런 변화를 일방향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전기와 1807년 양좌동(良佐洞) 호적초안(戶籍草案)에 나타난 18세기 말에 나타난 노비소유 관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18세기 말에는 양반과 상민, 천민간에 가족유형상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상민과 천민은 거의 전부 부부가족의 유형을 취하고 있는 데 비하여 양반은 세도가 높을수록 직계가족과 방계가족의 비율이 부부가족의 비율을 능가하고 있다. 배우자 유무는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신분이 높은 양반일수록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여러 쌍의 부부가 가족내에 존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신분이 낮은 상민이나 천민은 편부와 자녀 또는 편모와 자녀 등 불완전 가족의 비율이 높다.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이질적인 특성은 가족구조의 특성뿐만 아니라 상속제와 봉제사참여자격에서 딸들이 배제되는 것과도 연관된다¹⁾. 조선전기의 한국인들은 아버지 친족이나 어머니 친족의 구성원 자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친족구성원이 될 수도 있었다고 보고한다(마크 피터슨, 2000). 그러나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유교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계계열을 강조하고 인친(姻親)과의 관계는 잠재적으로 허물어져 간 것이다(Ebrey, 1986). 이제 가족보다는 종족에 더욱 큰 관심이 모아지고 “유교의 정통적인 부계성을 지나치리만큼 강조”하는 사회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계승, 종족의 유지를 한 집안의 절대절명의 사명으로 만들었으며 부계성의 강조와 함께 대부분의 양반층에서 양자제도를 보편화시켰다.

실제로 피터슨(2000)은 임진왜란과 이후 양란(兩亂)을 거치면서 많은 사상자들이 생김에 따라 가계계승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 사이에 입양의 필요성이 더 확산되지 않았을까 추론한다. 이때 가계계승을 위한 방법은 아들을 더 늘리는 방법과 처를 더 두는 방법이 있을 텐데(Goody, 1990) 중국과 한국 등에선 전자가 선호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선전기에는 데릴사위제도가 아들을 늘리는 방편으로 활용되었다면 조선후기로 갈수록 입양을 통해 아들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원화되었다. 이제 조선후기가 되면 거의 모든 양반과 양인은 아들이 없는 경우 같은 집안내에서 조카뻘 되는 사람을 택하여 양자로 들였다. 이와 같은 관행은 중국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서 입양의 전제조건은 같은 부계혈

1) “딸들은 부모 생전에 봉양하지도 않고 사후에 제사도 지내지 않는데 어찌 유독 유산만은 남자와 균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겠는가?(부안김씨 김명연의 傳後文書: 김현영, 2003 재인용)”

족내에서 소목의 서(昭穆之序)를 철칙으로 하여 이뤄졌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의 가계계승 원칙이 상당히 유사한 데 비해 일본의 가계계승 원칙은 사뭇 다르다. 한국과 중국의 전통가족에 비견되는 일본의 가족제도는 잘 알려져 있듯이 ‘이예(家)’이다. 이예의 가장권(家長權 또는 家督權)의 계승 역시 이예의 절대절명의 사명이지만 가장권 계승자의 자격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와 같이 엄격한 부계친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혈연의 장남에게 가장권이 계승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데릴사위, 비혈연입양(기혼부부를 같이 입양하는 경우도 있다), 오래 데리고 있던 소작인, 딸 등에게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가장권이 계승된다. 입양의 경우에도 소목의 서를 철저히 지키지 않아서 가장의 동생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도 발견된다(슈, 1985; 문옥표 외, 2001). 이와 같이 한국, 중국의 가족제도가 유교원리에 입각한 유사점을 갖는 데 비해, 일본의 가족제도는 상당히 구별되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

양자제도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조선시대 후기의 가족구성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3세가 채 안된 입양자는 적자(嫡子)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여 조선전기부터 입양제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만(《명종실록》), 조선전기에는 양자를 들이는 대신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관행이 시행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16세기 후반에 벌써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라 해도 그 딸이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게 것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점차 여성을 입양하거나 여성쪽의 친족을 입양하는 일이 어려워졌다.

신숙주는 “장자에게 아들이 없을 때 제사의 의무는 처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중종(1516년) 집권시 참찬관을 지낸 신상은 “오늘날 사대부(士大夫)의 반열에 있는 자들마저도 딸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있는 이는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양자를 세우려 하지 않는 이유는, 양자를 세웠을 경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딸들에게 주고 싶었던) 전택(田宅)과 노비가 타인, 즉 새로 들어온 양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꺼리는 탓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간한 바 있다.

이후 총부(冢婦)²⁾는 “자식이 있는 적처(嫡妻)로서 혼자된 사람”의 뜻으로 모아지면서 봉사자로서 제례에 참가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즉 호주가 사망하면 총부가 제사를 계승하던 관행(이순구, 1996; 조혜란, 2007)이 점차 호주의 동생 또는 서자(庶子)가 제사를 계승하는 관행으로 바뀌고 이것은 다시 호주의 부

2) 총부는 종가의 맏며느리이고 총부는 맏아들의 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총부에는 종부가 포함된다. 조선의 총부는 주로 남편이 죽은 맏며느리를 가리켰다.

계 조카의 입양으로 대체되었다. 조선후기에 서자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리한 조건보다는 불리한 조건이 훨씬 많았으며 승중자를 정해야 할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양을 선택했던 것이다.

17세기 말에만 해도 딸이나 사위는 이미 상속자로 간주되지 않았다. 입양이 이를 대체한 것이다. 그렇다면 입양의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일까? 입양은 일반적으로 생가(生家)와 양가(養家)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예조(禮曹)에 고하여 예사(禮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³⁾. 입양은 대체로 성년이 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뤄져서 양자의 나이는 보통 20-30세 전후이다. 그리고 입양시 양부와 친부의 나이는 대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이를 넘은 사람들이었고 반은 이미 고인이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바꾸는 것은 하늘을 바꾸는 것과 같으므로 국왕만이 이를 허락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양자제의 또 다른 특성은 먼 친척을 양자로 입양했다는 점이다. 조선 초기에는 양자가 주로 조카나 당질(堂姪) 등 근친자(近親者)로 집중되어 있는 데 비해서 조선후기로 내려올수록 점차 원친자(遠親者)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를 피터슨(2000)은 아마도 보다 유능한 인물을 양자로 들이려고 하였던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재석(1983)은 이런 경향을 부계혈연관계자의 유대의 확대를 뜻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전기와는 달리 근친자에 적격자가 없으면 원친자 속에서라도 꼭 양자를 구해야 되겠다는 강화된 입양사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속양대(連續兩代)가 모두 입양자인 경우는 조선후기에만 존재해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도 친생남아가 없으면 꼭 양자를 구해야 되겠다는 조선후기의 강한 부계계승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조선후기 양자제는 장자를 중시하는 주자학의 원칙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고 이제 딸과 사위는 더 이상 상속자가 될 수 없었다. 중국도 구질서에서는 비남계(非男系) 입양이 관행이었지만 종족체계에서는 소목의 서(昭穆之序)에 합당한 남계(男系) 입양이 요구된 바 있다. 한국의 상속제, 입양제의 변화 방향은 주희와 한국의 유학자들이 지지한 유교화된 부계적 관념이 그것이다. 출가외인이라는 관념의 강화와 균분상속 관행의 쇠퇴는 입양관행의 증가로 바로 연결된 것이다(김현영, 2003).

3) 이와 같은 것은 계후등록(季候謄錄), 법외계후등록(法外繼後謄錄), 수양시양등록(收養侍養謄錄), 수양승적일기(收養承嫡日記) 등 입양문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예조에 고하여 예사(禮斜)를 받지 않고 입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IV. 조선후기 의성김씨 5파의 가족구성

이 연구의 분석자료인 의성김씨 호구단자는 의성김씨 중 안동의 천전리(川前里)에 자리잡아 세거해 온 의성김씨로서 13세 진사 만근(萬謹)이 천전리에 터를 잡은 이래 그 손자인 진사 진(璉)을 파조(派祖)로 하여 그 다섯 아들의 후손가에서 250여 년간 전해 오는 문서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1989). 진사인 진은 호가 청계(靑溪)로 이조판서에 증직되었으며 장자는 약봉(藥峯) 극일(克一), 2자는 귀봉(龜峯) 수일(守一), 3자는 운암(雲巖) 명일(明一), 4자는 학봉(鶴峯) 성일(誠一), 5자는 남악(南嶽) 복일(復一)이며 이 오형제 자손들이 천전을 중심으로 신덕, 입하, 지례, 금계 등 안동 일역과 예천의 금당실, 구계에 마을을 이루어 세칭 천전 김씨라고 불리며 대대로 문인, 학자, 충효, 의열, 과환(科宦)을 배출하였다(박병호, 2004). 이제 이 다섯파의 250년에 걸친 가족구성의 변화와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 양반가의 가계계승 원리를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1669년부터 1913년에 이르는 250여 년간의 의성김씨 호구단자에 기록된 호구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호구단자에 기록된 총호구수는 251개이며 동일한 호주를 제외하고 다른 호주로 계승된 경우만 따지면 68개이다⁴⁾. 분석자료의 전체 호구 평균가구원수는 5.66명으로 17세기 초 한 양반촌에 대한 분석에서 평균가구원이 2.1명(최재석, 1983: 397)인 것과 비교하여 가족규모가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17세기 초 양반가족 분석결과 나타난 가족원이 되는 근친자의 종류와 의성김씨 호구단자에 나타난 가족구성원 범위는 큰 차이를 보였다. 17세기 초 양반가의 가족구성원 범위는 가구주를 제외하고 배우자, 子, 子의 배우자, 父, 母, 형제 등 6종의 자였다(최재석, 1983: 404). 이에 비해 의성김씨 호구단자에 나타난 가족원이 되는 근친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무려 70종이나 된다.

<표 1> 의성김씨 분석 호구 및 평균가구원수

	호구단자수	비율	호구수	비율	평균가구원수	표준편차
18세기(1669년-1799년)	108	43.0	36	53.0	4.47	2.31
19세기(1800년-1913년)	143	57.0	32	47.0	5.66	2.82
전 체	251	100.0	68	100.0	5.15	2.67

주: 동일 호주 호구를 제외한 호구수

4) 의성김씨 호구단자를 파별로 분류하여 가구원수, 가족유형 등을 살펴본 자료는 <부표>로 첨부하였음.

- ① 직계: 호주, 조모, 모, 처, 자, 자부(며느리), 손, 손부, 서조모
- ② 방계 2촌: 제, 매, 형수, 제부
- ③ 방계 삼촌이상: 숙부, 숙모, 종자, 종자부, 종형, 종수, 종질, 종질부, 종제, 종숙부, 종숙모, 종조모, 재종형(재종제), 재종형수, 재종조, 재종숙부, 재종질, 재종손, 족조, 족숙, 절족숙, 족질, 절종제, 절질자, 질자, 서족증조, 서족조, 서족, 삼종형, 삼종제, 삼종제수, 삼종질, 삼종질부, 서제, 서제수, 서종제, 서제종조, 재종조모, 삼종숙, 삼종숙모, 사종숙, 사종형, 사종수, 서삼종증, 제종숙부, 이성오촌, 육촌형, 생질
- ④ 기타: 절녀, 첩, 서자, 출계자⁵⁾, 일육, 가응족조, 전처, 여서(사위), 생모

물론 은기수(2004a)가 지적하듯이 호구단자에 기록된 사람들이 실제 그 당시에 한 집에 함께 살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호성은 17세기 초 양반분석의 자료인 산음호적(山陰戶籍)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호성으로서, 이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8세기, 19세기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의 친족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또 정교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1806년 양좌동 호적초안에서 분석한 이씨 문중의 가구당 평균 노비수가 2.01명인 데 비해(최재석, 1983: 416) 1681년부터 1913년까지 의성김씨 제3파 운암 김명일가의 가구당 평균 노비수는 무려 33.7명(표준편차: 13.5)에 달한다. 물론 이 차이가 시대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두 비교 가문의 세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분재기(分財記), 토지문서 등 면밀한 경제자료 분석이 뒤따라야겠지만 이것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다음의 <표 2>에 나타난 대로 18세기와 19세기의 가구원수별 호구 분포를 보면 조선후기로 갈수록 가구원수가 더욱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8세기와 19세기 의성김씨 가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는 둘 다 4인가구이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상대적으로 5인가구 이상에 분포한 비율이 높으며 무려 16인가구까지 다양한 가구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가구규모의 확대는 재력의 증대에 따른 부양 능력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만큼 부계 친족집단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17세기 초와 18세기, 19세기 양반가의 가족유형 구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17세기 초 산음호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부부가족의 비율이 무려 65%나 되고 직계가족, 방계가족은 다 합쳐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신분에 따라 직계가족과 방계가족간의 비율 차

5)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낸 구.

<표 2> 의성김씨 가구원수별 호구수

가구원수	18세기(1669년-1799년)		19세기(1800년-1913년)	
	호구수	비율	호구수	비율
1	4	3.7	-	-
2	12	11.1	5	3.5
3	25	23.1	27	18.9
4	27	25.0	31	21.7
5	12	11.1	28	19.6
6	12	11.1	11	7.7
7	6	5.6	7	4.9
8	4	3.7	8	5.6
9	2	1.9	10	7.0
10	-	-	4	2.8
11	1	0.9	5	3.5
12	2	1.9	3	2.1
13	1	0.9	3	2.1
16	-	-	1	0.7
전 체	108	100.0	143	100.0

이도 거의 없었다.

이것에 비해서 의성김씨 집안의 가족형태는 직계가족, 방계가족의 비율이 45%를 넘을 뿐 아니라 18세기, 19세기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이다. 이때 확대가족이라 함은 직계가족과 방계가족의 형태에서 친인척 3촌 이상의 자가 함께 사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재석 연구의 방계가족과 유사하다. 따라서 부계혈족으로 호주가 승계되는 부계계승원리의 강화와 조선후기 직계가족, 방계가족, 결합가족, 확대가족의 증가가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는 18세기에 비해서 확대가족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부부가족의 비중은 1/3 수준으로 약화되는 등 가구구성의 친족범위가 더욱 확장되었음을 보여 준다.

다음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부계친족원리의 강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호주가 죽고 처만 살고 있는 집의 경우 호구단자에 처는 여전히 ‘처’로 명시되고 이미 고인이 된 전호주를 호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가구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양자계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계후자(繼後者)⁶⁾를 찾기까지 호주가 없는 집으로 남아 있거나 호주대리인을 내세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가족형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6) 양자의 일종으로 가계계승을 위해 입양한 양자를 지칭하는 말임.

<표 3> 의성김씨 가족형태별 분포

가족형태	18세기(1669년-1799년)		19세기(1800년-1913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직계가족	34	31.5	26	18.2
방계가족	17	15.7	38	26.6
결합가족	7	6.5	3	2.1
확대가족	22	20.4	66	46.2
부부가족	11	10.2	5	3.5
호주단독가구	3	2.8	-	-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부부직계가족	13	12.0	5	3.5
호주 없이 처만 살고 있는 경우	1	0.9	-	-
전 체	108	100.0	143	100.0

- ① 직계가족: 호주와 기혼자녀 한 쌍, 호주의 미혼자녀, 기혼자녀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 ② 방계가족: 직계가족 구성에 호주의 형제자매(부부 및 그들의 미혼자녀)가 같이 사는 가족
- ③ 결합가족: 호주와 기혼 자녀 두 쌍 이상, 기혼 자녀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 ④ 확대가족: 직계, 방계, 결합가족 가운데 삼촌 이상의 친족과 같이 사는 가족
- ⑤ 부부가족: 부부만 사는 가족
- ⑥ 호주 단독 가족: 妻 없이 호주가 기혼 자녀 또는 미혼 자녀와 같이 사는 가족
- ⑦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부부직계가족: 부부가족 또는 직계가족에 전호주의 妻 즉 母와 같이 사는 가족
- ⑧ 호주 없이 처만 사는 가족: 전호주의 처가 자녀와 같이 사는 가족

17세기 초 배우자 없는 가구주는 양반의 경우 15% 정도로 신분이 높을수록 배우자 없는 가구 비율이 낮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의성김씨 가문의 배우자 유무 비율은 그들의 신분 고하를 나타내기도 한다. 18세기에 배우자 없는 호주가구는 5.6%, 19세기에 배우자 없는 호주가구는 11.2%였다. 그러나 이 호주 단자를 족보와 비교해 보면, <표 4>에 배우자 없는 호주가구 기록 가운데 상당수는 후처 등 배우자가 있으면서 기록에서 누락시킨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 양반가문의 경우 처가 없이 호주만 사는 집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서 가계계승이 집안의 중요한 사명인 만큼 가계계승자를 생산할 배우자의 존재는 필수적이었다.

<표 4> 의성김씨 편부모가족여부(호주의 처가 없는 경우)

편부모가족여부	18세기(1669년-1799년)		19세기(1800년-1913년)	
	호구수	비율	호구수	비율
호주의 처가 있는 경우	101	93.5	127	88.8
호주의 처가 없는 경우	6	5.6	16	11.2
호주 없이 처만 살고 있는 경우	1	0.9	-	-
전 체	108	100.0	143	100.0

V. 조선후기 의성김씨 5파의 입양과 가계계승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대로 조선후기 부계계승원리의 엄격성은 적장자(嫡長子) 계승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양자제도를 강화시켰다. 적장자가 죽거나 후사를 낳지 못할 때 둘째 아들이나 딸, 사위 등을 가계계승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조카를 입양하여 적장자의 지위를 부여한 후 이 양자에게 가계를 계승시켰던 것이다. 조선중기까지는 근친자인 조카를 입양하던 관행이 조선후기로 갈수록 원친자까지 입양 범위가 확대되는 등, 입양을 통한 적장자 가계계승의 노력은 한 집안의 필사적인 사명으로 전화되었다. 이때 계후자를 입양하는 일이 한 집안의 중대사가 됨에 따라 계후자로서 적임자를 찾을 때까지, 혹은 계후자를 입양할 형편이 될 때까지 기나긴 시간을 호주대리인을 내세워 온전한 가계계승을 유보한 채 살아가는 조선시대 양반가족의 삶을 떠올릴 수 있다.

다음의 <표 5>는 의성김씨 가문 전체에서 입후를 통해 가계를 계승한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동일한 호주 가구를 제외하고 전체 68가구 가운데 양자 계승을 한 경우는 모두 23가구로 무려 33.8%에 이른다. 당시의 인구학적 조건을 고려할 때, 아들을 출산할 확률도 낮거니와 더욱이 첫째 아들이 호주 자리를 승계할 때까지 살아 있을 확률은 더욱 낮다(은기수, 2004b; 김두섭 외, 2002).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장자가계계승 원리를 확고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활용된 것이 양자제도인 만큼 조선후기로 갈수록 이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엄격한 부계계승원리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또한 조선후기의 엄격한 부계계승원리는 상속제와 봉제사참여자격의 부계중심화 과정과도 연관된다. 실제로 조선시대 중기까지 망자(亡子)의 계후자를 결정할 때 망자의 부(父)가 아니라 망자의 처(妻)가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입양은 양부모(養父母)의 권한 사항으로서 망자, 즉 사망한 전호주의 부모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사례는 그만큼 조선중기까지는 가부장권이 강대하지 못

<표 5> 의성김씨 가계계승

가계계승 유형	18세기(1669년-1799년)		19세기(1800년-1913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친자 계승	25	69.4	19	59.4
양자 계승	11	30.6	12	37.5
호주대리인	-	-	1	3.1
전 체	36	100.0	32	100.0

주: 중복기록된 호구단자 제외.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서 조선후기로 가면 장남이 사망하여 봉사자(奉祀者)가 없는 경우에 망자의 부(父)가 장남의 양자를 결정하였으며 장남의 처가 그 양자의 선정에 이의를 말할 수 없게 되었다(朝鮮總督府中樞院, 1933). 조선중기(17세기 중엽)까지 아들, 딸 차별 없는 균분상속제(均分相續制)를 취하였으며, 제사도 자녀간에 윤회(輪回)하거나 분할하여 행했다고 알려져 있다(김현영, 2003). 그러나 점차 상속 대상에서 딸이 배제되고 장남으로 집중되면서 봉제사권도 적장자 위주로 부여되기에 이르렀고 이런 과정에서 엄격한 적장자 가계계승 원리가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가계계승 원리의 강화는 연속양대(連續兩代)가 모두 양자인 경우가 조선후기에만 존재했다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즉 이것은 집안에 들어온 계후자가 남자를 낳지 못하면 또 다시 계후자를 맞이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밖에 형에 출계(出繼)시킨 동생의 자(子)가 결혼 전에 사망하면 그 동생의 다른 자(子)를 다시 그 형에게 출계시킨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최재석, 1983: 602).

그렇다면 의성김씨 가문의 입양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했을까? 지금부터 의성김씨 각 파별로 양자계승을 한 집안의 입양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표 6> 참조). 호구단자에 나타난 호주의 이름과 양자의 이름, 생부가 누구인지, 이 양자가 어느 시기에 입양됐는지 등을 기록에 나타난 대로 정리해 봄으로써 조선후기 양반가의 가계계승을 위한 지난한 노력을 보다 생생하게 재현해 보겠다.

7) 생부(生父)가 자신의 자(子)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는 것을 의미함.

<표 6> 의성김씨 파별 가계계승

가계계승 유형	1파		2파		3파		4파		5파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친자계승	5	7	1	2	7	1	4	4	8	5
양자계승	2	3	4	2	1	5	1	1	2	1
호주 대리인	-	-	-	-	1	-	-	1	-	-
전 체	7	10	5	4	9	6	5	6	10	6

주: 18세기: 1720년-1799년, 19세기: 1900년-1913년.

1. 의성김씨 제1파 약봉 김극일 후손의 양자계승 사례

의성김씨 제1파 약봉 김극일 후손의 양자계승 사례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17호구 중 5호구로 29.4%에 이른다. 18세기와 19세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양자계승을 한 5호구의 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8세기 양자계승 사례

- ① 1741년도 호주 김시원은 입양된 자로서 생부는 덕하이교 양부는 민행이다. 이전 호구기록이 없어 정확한 입양 시점과 생부 덕하가 양부 민행과 어떤 친족관계인지는 알 수 없다.
- ② 1780년 호주 김시전은 입양된 자로서 생부는 제행이고 양부는 낙행이다. 낙행은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을 남기지 못해 동생인 제행의 아들 김시전(45세, 1736-1816)을 양자로 맞아들여 가계를 잇고 있다. 1780년 이전 21년 동안 호구기록이 없어 김시전이 정확히 언제 양자로 입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2) 19세기 양자계승 사례

- ① 1904년 호주 김병식은 입양된 자로서 생부는 정락이고 양부는 이전 호주인 형락이나, 이전 호구기록이 60년 동안 누락되어 정확히 입양된 시점을 알 수 없다.
- ② 1867년 호주 김진성은 입양된 자로서 생부는 계수, 양부는 이전 호주인 윤수이나, 이전 호구기록이 75년 동안 누락되어 있어 정확히 입양된 시점을 알 수 없다.
- ③ 1891년 호주 김병락은 이전 호주 김진성(1820-1883)의 양자로 김병락의 생부는 진각이다. 김병락은 호구기록상 호주 생전인 1867년부터 입양되어 24년 후인 1891년에 호주가 된다. 아들을 낳지 못한 전호주 김진성은 48세부터 계

후자를 입양하여 가계계승을 준비하고 이후 16년을 더 살다가 호주자리를 물려주고 죽었다.

2. 의성김씨 제2파 귀봉 김수일 후손의 양자계승 사례

의성김씨 제2파 귀봉 김수일 후손의 양자계승 사례는 전체 9호구 중 6호구로 무려 66.7%에 이른다(<표 6> 참조). 18세기와 19세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양자계승을 한 6호구의 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8세기 양자계승 사례

- ① 1702년의 호구기록에는 김세건의 처인 안강노씨(59세)만이 나온다. 족보에 따르면 김세건은 1698년에 죽었고 母 조씨는 1680년에 죽었기 때문에 1702년 호구기록에는 안강노씨만 나올 수밖에 없다. 또 김세건과 안강노씨 사이에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59세 된 과부 안강노씨만 기록되어 있다. 족보에 따르면, 김세건이 죽기 전뿐만 아니라 김세건이 죽은 후 만 4년이 지날 때까지도 양자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702년부터 1711년 사이의 호구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1711년 것이 남아 있다. 이때의 호구기록에 따르면 김정하(23세, 1689-1725)가 김세건의 양자로 호주로 등장하고 있다. 김정하는 김세건과 9촌이다. 언제 양자로 결정되어 귀봉 김수일로부터 내려오는 종가의 대를 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김세건 사후에 양자로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 ② 1744년 호주 김상열은 입양된 자로서 생부는 복하이교 양부는 이전 호주인 정하이다. 이 역시 호구기록이 누락되어 정확히 언제 양자로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족보의 기록으로 따져볼 때 김정하의 사후에 김상열이 양자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 ③ 1729년 호주 김복하는 입양된 자로서 생부는 세경이고 양부는 이전 호주 세석이다. 그러나 호구기록이 1729년부터 시작하고 있어 정확히 언제 양자로 결정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김복하는 위의 둘째 사례에서 입양된 호주인 김상열의 생부로서 자신이 입양되어 김세석의 가계를 계승하고 자신의子是 김정하의 집으로 출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가계계승을 위해서 입양하고 출계하는 범위가 더욱 확장됨으로써 양대에 걸친 입양, 여러 아들의 출계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④ 1726년 호주 김우하는 입양된 자로서 생부는 세구이고 양부는 이전 호주인 창석이다. 이 역시 호구기록이 1726년부터 시작하고 있어 정확히 언제 양자로 결정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2) 19세기 양자계승 사례

- ① 1822년의 호주 김조수는 전 호주 김현운 생전에 양자로 미리 정해져 김현운이 1816년 죽은 뒤 바로 호주의 자리를 승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② 1879년의 호주는 김주병으로 생부는 규락, 양부는 이전 호주인 광락이다. 9년 전의 호주 김용진에서 김주병으로 바로 가계가 계승된 것은 아니다. 김용진은 1858년에 죽었다. 김용진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광락이 가계를 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광락은 아내 진보씨와의 사이에 후사를 남기지 않고 아버지가 죽은 바로 다음 해인 1859년에 죽었다. 그 뒤 귀봉 김수일가는 귀봉파가 아닌 제1파 약봉파 김규락의 아들 주병을 양자로 선택해 호주로 삼아 대를 이어 나갔다.

3. 의성김씨 제3파 운암 김명일 후손의 양자계승 사례

의성김씨 제3파 운암 김명일 후손의 양자계승 사례는 전체 15호구 중 6호구로 40%에 이른다(<표 6> 참조). 또한 호주가 없이 처만 있어서 호주대리인으로 분류되는 호구가 한 사례 발견된다. 18세기와 19세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양자계승을 한 6호구의 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8세기 양자계승 사례

- ① 1711년의 호주 김상렴은 전 호주 김세연의 대를 이어 호주로 나타나고 있다. 족보의 기록에 따르면 상렴은 김세연의 9촌 조카이다. 종가의 장손도 양자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면 이 경우를 보고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711년부터 호구기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호구기록만으로는 김상렴이 언제 입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2) 19세기 양자계승 사례

- ① 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로서 양자로 들어가 대를 잇다 다시 죽은 전호주의 아들(양자)에게 호주를 물려준 경우이다. 1801년 김용섭이 죽어 호주를 세워야 하나 그의 아들 김시철이 먼저 죽었고 후사가 없었다. 그래서 김용섭이 양자로 오기 전의 친동생인 용덕의 아들 김민철이 이 가구의 호주로 대신 등장하고 있다. 1810년의 호구 기록에 종질 진표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김진표의 생부는 일한옹파 남수라고 기록되어 있다. 1813년에 김민철은 호주의 자리를 종질자 김진표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단순한 가구구성원으로 남았

- 다. 1819년에 함께 거주하던 종숙부 김민철(김성규)은 이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 ② 1813년의 김진표는 김시철의 대를 이어 호주로 등장한다. 그러나 생부는 김남수이다.
- ③ 1834년에 호주 김정락이 김진표의 대를 잇고 있다. 그러나 생부는 김서락이다. 이 경우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1824년에 김진표가 대를 이을 후사 없이 죽었다. 1822년부터 1834년까지 호구기록이 없다. 이 기간 동안 대를 이을 아들(양자)이 너무 어려 김진표의 먼 조카인 김서락이 대신 호주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834년의 호구기록이 '김서락 대재종제 유학 김정락'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④ 1877년 김중술은 이전 호주 김병락의 대를 잇고 있다. 생부는 김영락으로 이전 호주 김병락 생전인 1870년에 호구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그 뒤로 약 7년뒤 1877년에 호주가 된 것이다.
- ⑤ 1861년 김필락이 이전 호주 김진하의 대를 잇고 있다. 그러나 생부는 김진하의 동생인 김진기로 이전 호주 김진하의 생전에 양자로 결정되어 1849년부터 호구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약 12년 후인 1861년에 호주가 된다.

의성김씨 제3파 운암 김명일 후손의 호구단자에는 특이한 사례가 발견된다. 1723년에 호주인 김여방은 김상렴의 둘째아들이지만 형 김우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김상렴이 죽은 다음 일단 호주가 되었다. 그러나 둘째아들이기 때문에 과부 형수를 모시고 살면서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양자로 용구를 정해 김용구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살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김여방이 일종의 호주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당시 세도 있는 양반 가문에서 적장자 가계계승 원칙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4. 의성김씨 제4파 학봉 김성일 후손의 양자계승 사례

의성김씨 제4파 학봉 김성일 후손의 양자계승 사례는 전체 11호구 중 2호구로 18.2%에 이른다(<표 6> 참조). 이 호구단자에서도 호주대리인 호구가 한 사례 발견된다. 18세기와 19세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양자계승을 한 두 호구의 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8세기 양자계승 사례

- ① 1729년의 호주 김주국이 아버지 김숙렴의 아들로 나오고 생부는 김숙렴의 동생인 김복렴이라고 나온다. 입양시점 유형은 호구기록이 1705년부터 1729년까지 누락되어 알 수 없다.

2) 19세기 양자계승 사례

- ① 1900년도에 김홍락의 손자 김용환이 호주가 된다. 1867년의 호구기록에 따르면 김홍락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 41세에 양자를 들이고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1870년의 호구기록은 호주 김홍락(44세)이 양자 응모를 잃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뒤를 이을 자식이 계속 없다가 1899년도의 호구기록은 호주 김홍락(73세)이 죽은 응모의 양자로 김용환을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족보의 기록에 따르면 김홍락은 1899년에 죽었다. 즉 김홍락은 양자를 맞은 지 얼마 안 되어 죽은 것이다. 그러나 김홍락은 대를 잇기 위해 생전에 두 번의 양자를 입양하는 등 가계계승을 위해 소임을 다했다.

의성김씨 제4과 학봉 김성일의 호구단자에는 호주의 동생이 다음 양자를 세우기 전까지 호주대리인을 맡은 경우가 기록되어 있다. 1879년의 호구기록에 의하면 호주 김병모가 죽고 대신 동생 술모(33세)가 호주로 등장하고 있다. 족보에 의하면 김병모는 1877년에 죽었다. 김병모가 1877년에 죽어 2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양자를 정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술모의 아들이 양자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양자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대신 동생이 호주로 등장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사례는 동생이 호주를 승계하고 있는 경우이다.

1882년 호구기록을 통해 김병모의 양자가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김승환은 김술모의 장남이다. 그런데 이번 호구기록에 처음 등장하면서 아예 출계자로 명시하고 있고, 그 아내 이씨는 며느리라 하고 있다. 이는 김승환이 15세의 나이인 1882년 현재 죽은 김병모의 양자로 결정되었음을 뜻한다. 김승환은 15세에 결혼까지 해서 김병모의 뒤를 이어 호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생부인 김술모가 호주를 대신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호구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조모가 호주대리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호주가 있다. 1768년부터 1780년까지 호구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데, 1780년의 호구기록을 통해 가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다. 호구기록은 ‘조모이씨 대 통덕랑 김종수(20세, 1761-1813)’로 시작하고 있다.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김주국은 1771년에, 그의 아내 한산이씨는 1793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김주국의 큰아들 광찬은 김주국이 살아 있던 1765년에 죽었기 때문에, 김주국이 1771년에 죽었을 때 김주국의 장손인 김종수의 나이는 11세에 불과해 바로 호주로 나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주국의 대를 이을 김종수가 장성할 때까지 김주국의 아내 한산이씨가 대신 호주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반가에서 설사 대를 이을 적손이 있어도 나이가 어리면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일시적으로 호주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의성김씨 제5파 남악 김복일 후손의 양자계승 사례

의성김씨 제5파 남악 김복일 후손의 양자계승 사례는 전체 16호구 중 3호구로 18.8%에 이른다(<표 6> 참조). 18세기와 19세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양자계승을 한 3호구의 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8세기 양자계승 사례

- ① 1765년에 김상운이 호주 김시현의 뒤를 이어 호주가 되었다. 그의 생부는 시모로 양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29년부터 1765년까지 호구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언제 정확히 양자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다.
- ② 1855년에 김달운의 뒤를 이어 김회수가 호주가 되었다. 호구 기록에 의하면 김회수는 양아들이고 생부는 흥운이다. 그러나 1798년부터 1855년까지 약 60년 동안의 호구기록이 누락되어 언제 양자로 결정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2) 19세기 양자계승 사례

- ① 1720년의 호구기록에 보면 호주가 김세원(24세, 1697-?)이다. 김세원은 김하기의 뒤를 이었지만 양자이고 생부는 김극기이다. 김세원은 김하기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어 양자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언제 양자가 되어 김하기의 뒤를 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어머니 권씨(29세), 아내 고씨(21세)가 함께 살고 있다.

지금까지 의성김씨 각파별로 23호구의 양자계승 과정을 살펴보았다. 모든 사례가 말해 주고 있는 것은 조선후기 의성김씨 양반가의 적장자중심 가계계승이 모든 가구원의 일생에 걸친 과업이라는 점이다. 이런 사회적 규범 속에서 의성

김씨 호구단자에 나타난 양반들의 가족구성은 정태적인 단일 가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해결해야 할 사안에 따라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매우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다양한 양상도 발견된다. 일정 시기 동안 같이 살던 방계가족이 자신이 살던 원래 집으로 돌아간 경우도 발견되고(1768년 호구단자), 차남 이하의 자식을 양자로 출계한 집도 적잖이 발견된다. 18세기에 같이 살던 가구원이 집을 떠난 것으로 기록된 경우는 11호구 정도였다. 이 가운데에는 직계가족 아들 3명 중 다른 집으로 출계시키거나 차남이하 아들이 분가하여 자신의 호구를 창립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숙부, 종제 등 방계가족이 분가하여 자신의 호구를 창립한 경우도 7사례 발견된다. 함께 살던 누이가 출가한 경우도 한 사례 발견된다. 19세기에는 직계가족 가운데 1명을 출계시키고 방계가족 가운데 한 명이 분가하여 자신의 호구를 창립한 경우가 발견된다.

또한 양자가 호주 생전에 결정되지 못하여 호주 대리인으로 가계를 임시로 잇다가 호주 사후에 양자를 들인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이때 호주대리인으로는 전호주의 동생이나 처, 둘째 아들 등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가계계승의 책임자를 찾을 때까지 한 집안의 다양한 가족원이 임시로 호주를 맡는 상황을 은기수(2004b)는 가족전략을 넘어서서 ‘종족전략’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매우 광범위한 가족관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확대가족의 형태도 발견되고 심지어 종가의 장손이 다른 집의 양자로 가는 경우도 발견되었다(1711년 제3파 김상렴의 경우). 뿐만 아니라 양자로 들어가 집안의 대를 잇다가 다시 죽은 전호주의 아들(다른 양자)에게 호주를 물려주는 경우도 있다(1801년 김용섭 호구). 이처럼 조선후기 양반가의 가족생활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가계를 이어가며 그들이 살던 시대의 사회적 소임을 다해 온 것이다.

Ⅶ. 결 론

지금까지 의성김씨 호구단자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양반가의 가족구성형태와 가계계승 원리를 살펴보았다. 먼저 조선후기(1669-1913년) 의성김씨 5파의 가족구성을 보면, 분석자료의 전체 호구 평균가구원수는 5.66명으로 17세기 초 한 양반촌에 대한 분석에서 평균가구원이 2.1명(최재석, 1983: 397)인 것과 비교하여 가족규모가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세기 초 양반가의 가족구성

원 범위가 가구주를 제외하고 배우자, 子, 子의 배우자, 父, 母, 형제 등 6종의 자였던 데 비해(최재석, 1983: 404), 의성김씨 호구단자에 나타난 가족원이 되는 근친자의 종류는 무려 70종이나 되었다. 결국 18세기, 19세기로 이어지는 조선후기의 친족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또 정교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구성의 복잡성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 의성김씨 집안의 가족형태는 직계가족, 방계가족의 비율이 45%를 넘을 뿐 아니라 18세기, 19세기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이었다. 즉 부계혈족으로 호주가 승계되는 부계계승원리의 강화와 조선후기 직계가족, 방계가족, 결합가족, 확대가족의 증가가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는 18세기에 비해서 확대가족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부부가족의 비중은 1/3 수준으로 약화되는 등, 가구구성의 친족범위가 더욱 확장되었음을 보여 준다.

조선후기 의성김씨 5파의 양자제도 사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성김씨 가문 전체에서 입후를 통해 가계를 계승한 사례는 동일한 호주 가구를 제외하고 전체 68가구 가운데 모두 23가구로 무려 33.8%에 이른다. 이와 같은 사례가 말해 주고 있는 것은 조선후기 의성김씨 양반가의 적장자중심 가계계승이 모든 가구원의 일생에 걸친 과업이라는 점이다. 이런 사회적 규범 속에서 의성김씨 호구단자에 나타난 양반들의 가족구성은 정태적인 단일 가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해결해야 할 사안에 따라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매우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정 시기 동안 같이 살던 방계가족이 자신이 살던 원래 집으로 돌아간 경우도 발견되고(1768년 호구단자), 차남 이하의 자식을 양자로 출계한 집도 적잖이 발견된다. 18세기에 같이 살던 가구원이 집을 떠난 것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직계가족 아들 3명 중 다른 집으로 출계시키거나 차남이하 아들이 분가하여 자신의 호구를 창립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양자가 호주 생전에 결정되지 못하여 호주 대리인으로 가계를 임시로 잇다가 호주 사후에 양자를 들인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이때 호주 대리인으로는 전호주의 동생이나 처, 둘째 아들 등인 경우가 많다. 매우 광범위한 가족관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확대가족의 형태도 발견되고 심지어 종가의 장손이 다른 집의 양자로 가는 경우도 발견되었다(1711년 제3파 김상렴의 경우). 뿐만 아니라 양자로 들어가 집안의 대를 잇다가 다시 죽은 전호주의 아들(다른 양자)에게 호주를 물려주는 경우도 있었다(1801년 김용섭 호구).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 결과를 통하여 조선후기의 가족형태가 조선전기나 조선중기의 가족형태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부계계승원리의 강화이며 그 한가운데 양자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양반들이 입양을 통해서라도 적장자 가계 계승을 유지하려고 고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중기까지도 자녀간 제사 윤행(輪行)과 자녀균분상속제가 이어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재력이 있는 가문을 제외하고는 재산규모가 영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분재기인 윤덕회 12남매의 화회문기를 보면 당시 종가의 경제력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었던지를 짐작할 수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1989). 많은 고문서들이 보여주듯이 양반가에서 1년에 20회 이상의 제사를 지내면서 종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제사 윤행으로 봉제사부담을 나누는 것보다 적장자에게 봉제사권을 집중시키면서 이와 동시에 재산도 집중시키는 것이 한 집안의 세도를 유지하는데 더욱 유리하다고 여겨진 듯하다. 실제로 가문의 재산규모가 클수록 자녀균분상속제를 보다 오래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현영, 2003). 또한 조선후기로 갈수록 남자중심, 長子중심의 재산상속 방식의 변화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중국 고대 유교의 종법적 원리가 도입, 확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규범적 계기를 통하여 조선후기 사회는 엄격한 적장자가계계승을 가문의 사명으로 여기는 사회로 변모했던 것이다.

의성김씨 5파의 가족구성과 양자제도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적어도 조선후기 양반가의 이념형적 가족형태는 우리가 우리의 전통가족이라고 알고 있었던 가장 중심을 한 확대가족이었다. 그러나 이런 이념형적 가족이 조선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계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적장자에게 가계를 계승하는 종법제의 확립이 당시 양반가의 중요한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종족 전체가 일생 동안 지향해 온 하나의 가족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규범 속에서 종족집단은 자신의 직계혈통에게 가계를 계승하는 것보다도 입양을 통해서라도 ‘적장자 자리’라는 명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종족전략이 상속제와 봉제사권에서 여성을 배제한 것과 연관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조선후기 양반가의 가족구성 및 가계계승원리를 보다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성김씨 5파의 분재기, 토지·가옥·노비 등에 대한 매매문서 등의 경제관련 자료, 가훈 등의 기타 고문서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분석 작업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 권태환·신용하 (1977) “조선왕조시대 인구 추정에 관한 일시론” 《동아문화》 14.
- 김두섭·박상태·은기수 (2002) 《한국의 인구》 통계청.
- 김현영 (2003)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회사》 신서원.
- 마크 피터슨 (2000) 《儒敎社會의 創出: 조선 중기 입양제와 상속제의 변화》 일조각.
- 문옥표 외 (2001) 《동아시아 문화전통과 한국사회 -한·중·일 문화비교를 위한 분석틀의 모색》 백산서당.
- 박병호 (2004) “생활사 연구와 고문서” 문옥표 외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義城 金氏 川前派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백산서당.
- 박희진·차명수 (2003) “두 족보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人口變動, 1700-1938” 낙성대경제연구소 주최 학술대회 《한국의 장기경제통계》.
- 손병규 (2007) 《호적》 휴머니스트.
- 은기수 (2004a) “가계계승의 다양성과 ‘종족전략’” 문옥표 외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義城 金氏 川前派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백산서당.
- _____ (2004b) “의성김씨가 가족의 변화: 호구단자 기록의 해제를 중심으로” 문옥표 외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義城 金氏 川前派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백산서당.
- 이미숙 (2007) 《인구대사전》 통계청.
- 이순구 (1996) “조선중기충부권과 입후의 강화” 《고문서연구》 한국고문서학회.
- 정진성 (1990) “서구 가족사 연구의 부흥: 아날학파와 케임브리지 그룹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24호 한국사회사학회.
- 조혜란 (2007) “<규한록>, 어느 억울한 종부의 자기주장” 《여성이론》 여이연.
- 최재석 (1983)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지사.
- _____ (1987)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프란시스 슈 (1985) 《이에모또: 일본 사회에 대한 심리 인류학적 접근》 현상과인식.
- 한국학중앙연구원 (1989) 《古文書集成: 義城金氏川上各波篇》 五, 六, 七. 한국학중앙연구원.
- 《經國大典》 (1978) 경문사.
-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58.

朝鮮總督府中樞院 (1933) 《民事慣習回答彙集》.

Burgess, E. W. and H. J. Locke (1953)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New York: American Book.

Ebrey, P. B. (1986) "The Early Stages in Development of Descent Group Organization" in *Kinship Organization in Late Imperial China 1000-1940*, edited by P. B. Ebrey and J. L. Wats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oody, J. (1990) *The Oriental, the Ancient, and the Primitiv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표 1> 의성김씨 가구원수별 호구수

가구원수	1파		2파		3파		4파		5파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1	-	-	2	-	-	-	-	-	2	-
2	-	-	3	-	7	4	-	1	2	-
3	-	3	3	1	15	6	-	13	7	4
4	2	3	1	-	18	16	4	10	2	2
5	2	3	1	2	5	6	1	14	13	3
6	-	2	2	1	8	3	1	5	1	-
7	2	1	-	1	3	1	1	2	-	2
8	2	4	-	2	1	-	1	2	-	-
9	-	5	-	2	-	-	2	-	-	1
10	-	-	-	2	-	1	-	-	-	1
11	-	2	-	3	-	-	1	-	-	-
12	-	2	1	1	-	-	1	-	-	-
13	-	3	-	-	-	-	-	-	-	-
16	-	-	-	1	-	-	1	-	-	-
합 계	8	28	13	16	57	38	13	48	17	13

주: 18세기: 1720년-1799년, 19세기: 1900년-1913년.

<부표 2> 의성김씨 가족형태별 호구수

가족형태	1파		2파		3파		4파		5파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직계가족	2	6	4	-	16	6	4	11	8	3
방계가족	2	2	1	-	10	10	-	18	4	8
결합가족	1	1	-	-	6	-	-	-	-	2
확대가족	3	16	2	15	7	17	9	18	1	-
부부가족	-	-	2	-	7	4	-	1	2	-
호주 단독가구	-	-	1	-	-	-	-	-	-	-
홀어머니+부부	-	-	2	1	11	1	-	-	-	-
호주가 없는 경우	-	-	1	-	-	-	-	-	-	-
합 계	8	28	13	16	57	38	13	48	17	13

주: 18세기: 1720년-1799년, 19세기: 1900년-1913년.

<부표 3> 의성김씨 편부모 가족여부별 호구수

편부모 가족여부	1파		2파		3파		4파		5파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호주+처	7	17	11	16	54	36	12	46	17	12
호주만 있는 경우	1	11	1	0	3	2	1	2	0	1
처만 있는 경우	-	-	1	-	-	-	-	-	-	-
합 계	8	28	13	16	57	38	13	48	17	13

주: 18세기: 1720년-1799년, 19세기: 1900년-1913년.

Family Structure and Succession of the Late Chosun Seen through Male Adoption

Soomi Park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principle of family succession and family patterns of yangban in the late Chosun period through an analysis of male adaptation cases found in family registration records. The primary source of analysis is the family registration documents of Uiseong Kim's from the late 17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change in the patterns of family from the early and mid Chosun period to the late Chosun period. The change is the strengthening of the principle of patriarchy succession through male adoption. Looking at the data as a whole, the averag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s increased and the membership of kinship also expanded. In contrast to the family patterns of the early Chosun period, not only the patterns of Uiseong Kim's family are predominately immediate family or collateral family but also the majority is extended famil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male adoption cases recorded in Uiseong Kim's family registration documents take up 33.8% of the male adoption cases in the entire family registration documents. This goes to show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principle of primogeniture succession at a time when child mortality rate is very high resulted in the increase of male adoption. In conclusion, the late Chosun society was a society where the seat of primogeniture was much more important than immediate hereditary members in the family succession.

Key Words: hogudanja, male adoption, late Chosun family patterns,
primogeniture succession